

제85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- **일시·장소:** '23. 9. 18.(월) 13:25 ~ 14:20 / 부산해경서 중회의실
 ※ 해양경찰위원 부산권역 현장방문 관계로 **2원 화상회의(본청↔부산서)로 진행**
- **참석자**
 - 해양경찰위원회 : 길태기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6명
 - 해양경찰청 : 차장, 기획조정관, 안전 소관 국·과장 등
- **개최 결과:** 심의·의결 7건 (원안의결 5, 수정의결 2), 보고 1건

【심의·의결 7건】

연번	형식	안건명	내용	심의결과	부서
1	훈령	「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서장 보직군(1·2군) 신설*, 보직기준 마련** * (1군) 인천·목포·부산·동해·제주서장, (2군) 그 외 서 ** (1군) 총경으로 서장 유경험자 또는 상황부서 1년 이상 근무자, (2군) 총경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• 본청 경정 전입기준 완화*, 연속근무 기간 조정** * (기존) 경사~경감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 → (변경) 경위 이상으로 지방청 4년 이상 근무자도 가능 ** (기존) 연속근무 6년까지 가능 → (변경) 5년까지로 단축	수정의결	인사
2	훈령	「해양경찰 표창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소속기관 표창권자 개정* 및 표창장 서식 개선 * (연구센터장) 표창권자에 추가, (함장) 기존 '250톤급' 이상 함장 → '1천톤급' 이상 함장으로 변경	원안의결	
3	훈령	「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」 전부개정안	• 위촉심의 절차 구체화* 및 승진위촉 근거조항 마련 * 소속기관 자체위촉 시 청장보고 조항 신설	수정의결	
4	훈령	「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전담 직무대리 지정 사유 확대* * (기존)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진후보자에게 지정 (변경) 청장이 직무공백 방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를 추가	원안의결	
5	훈령	「근속승진 운영 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 방식 정비 ※ 본청과 증특단이 명부를 분리 작성 가능하도록 변경	원안의결	
6	부령	「해양경찰수사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'수사준칙' 개정에 따른 고소·고발 접수절차 개선 ※ △ 고소·고발은 모든 건을 접수하도록 반려제도 폐지, △ 접수 후 각하사유 확대(혐의 확인 자료 미제출, 수사 필요성 없음 등), △ '진정 전환 수리' 사유 확대(본인 진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 불가시, 이중고소·고발시), △ 각하 대상 사건 검토절차 신설(수리일로부터 2개월 내) 등	원안의결	수사 기획
7	훈령	「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」 일부개정안		원안의결	

【보고 1건】 「임용에 관한 규정」 법제처 심사결과 보고 (인사)